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27
----------	-----

2024. 3. 22.(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2024년 3월 14일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재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운영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5조)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안 제6조)
- 학생 대상 교육 실시 규정 (안 제7조)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지원 규정 (안 제8조)
- 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정 이유

- 시행 16년 차를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잘못된 인식의 위험성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2명 중 1명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 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게 나타났음.

< 사회적 차별 경험율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21.4	18.7	19.8
	또래학생으로부터	49.2	47.1	50.7
	학부모로부터	15.1	13.7	18.4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대한 학교생활 중 차별 (2017년)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위(%)	37.1	40.3	33.0	26.0	11.6

출처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 더욱이 지난 2020년에는 한 10대 청소년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친구 사진을 첨부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개념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기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지식 등이 제공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내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생활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충북, 세종, 전남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통한 통합교육의 효과 향상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시도 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24년 02월 기준)

순	교육청	조례명	제정시기
1	강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2019.12.27.
2	경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17.11.10.
3	경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20.06.04.
4	경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1.
5	광주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2019.10.15.
6	대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20.05.11.
7	대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	2018.12.28.
8	부산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2012.12.19.
9	서울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2018.01.04.
10	울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20.02.27.
11	인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20.01.02.
12	전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23.04.28.
13	제주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2021.07.14.
14	충남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	2019.04.22.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고,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감에게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교육 교재 개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²¹⁾의 비전 및 주요 과제 등을 담은 ‘충북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효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제6차 충북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

비전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충북특수교육 실현
-----------	-----------------------------------

추진전략	주요 과제
①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②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③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④ 전환교육 지원	4-1.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영역 및 과제	23년도 추진 성과 및 실적
②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132교 -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 177교 ● 충청북도교육도서관(점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2회, 67명

출처: 2024 충북특수교육운영계획

21) 제6차 충북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 ~ 2027년):

-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 확대 등 목표
- 충북형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합학급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추진

< 충북특수교육원 2023년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현황 >

구분	원격 체험	방문 체험	찾아가는 장애이해
유	58교 2,995명	22교 594명	
초	55교 4,020명	19교 525명	86교 5,122명
중	12교 3,330명	5교 118명	46교 3,220명
고	6교 1,982명	.	.
계	131교 12,327명	46교 1,237명	132교 8,342명

자료제공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교육감이 제5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해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다음 년도 교육 계획의 효율적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교육의 실시)는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²²⁾에 의거해 교육 실시 주기 및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²³⁾ 에서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2)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생략)

23) 제8조(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 그러나, 지난 2019년 있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의 체계 화임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안 제8조(지원)**에는 교육감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담당 강사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 보급 등 지원 확대는 효율적인 장애 인식 교육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통합교육의 효과를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2023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체험 프로그램 >

체험유형	체험 프로그램 안내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스포츠(보치아)	장애인스포츠(농구)
방문체험			
	시각장애체험	장애이해인형극	보조공학기기 체험

교육이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의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장애이해콘텐츠+학습자료		
	1~2학년 수어스티커	3~4학년 휠체어모형	5~6학년 점자 명함
원격체험			

자료제공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안 제9조(지도·감독)에서는 교육감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4) 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도 교육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4)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본조신설 2021. 6. 1.]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
 - 특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사회성 형성이 활발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을 통한 인성 함양 및 통합 교육 효과의 향상 등 교육적 성과를 위한 것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체험 중심의 장애 이해 프로그램 제공 등 적극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지원 노력과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등을 조례안에 명시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 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입법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보급
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장애이해 체험관 운영비 (보조공학기기 구입, 학생 이동 차량 운행 임차비 등)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비
-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

3. 관련 조문

- 안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제2항, 안 제8조(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보급
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가.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나. 전제

-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 이해 교육의 대상을 각급 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따라 예산 소요액은 증감될 수 있음.
- 2) 교직원, 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3) 지출은 사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지속 발생

다. 비용추계의 결과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56,000 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52,000 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라. 추계비용의 상세내역

- 1) 체험관 운영비: 24,000천원
 - 2024년: 1,000천원 × 1실 × 12월 = 12,000천원
 - 2025년: 1,000천원 × 2실 × 12월 = 24,000천원
 - ※ 2025년부터 원격 장애이해교육 추가 편성
- 2) 보조공학기기: 30,000천원
 - 2,000천원 × 15종 = 30,000천원
- 3) 콘텐츠 제작관리비: 16,000천원
 - 2024년: 10,000천원 × 1종 = 10,000천원
 - 2025년: 4,000원 × 20교 × 200명 = 16,000천원
- 4) 전문 강사비: 4,000천원
 - 200천원 × 1명 × 2시간 × 10회 = 4,000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스템 구축· 운영	체험관 운영 (충북특수교육원)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보조공학기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콘텐츠제작관리비	10,000	16,000	16,000	16,000	16,000	74,000
		전문강사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소계						
		소계(b)	56,000	74,000	74,000	74,000	74,000	74,000
	□ 총 비용(b-a)		56,000	74,000	74,000	74,000	74,000	352,000